

부속서 8-나

통신

1. 적용범위

- 가. 이 부속서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나.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1)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2. 접근 및 이용¹³

-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나호부터 바호까지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 나.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1) 공중 통신 전송 망에 상호 연결되고,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2)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소유 또는 전용회선과 접속하는 것,¹⁴ 그리고

¹³ 베트남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국내 통신 기반시설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통신서비스 무역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 할 수 있다.

- 3)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 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라. 다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마.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1)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 2)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 3)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약속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 바. 마호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 2)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3)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 4)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¹⁴ 베트남의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폐쇄 이용자 그룹 회원 간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도록 인가된 망들은 통신규제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직접 상호접속을 할 수 있다.

- 5) 시설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임차 또는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한, 또는
- 6) 통보, 등록 및 허가

3. 경쟁보장장치

-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 나. 이 항에서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2)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3) 다른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또는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4. 허가 절차

- 가. 당사국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 1)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 2)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 3)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 나.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상호접속¹⁵

¹⁵ 가호1)목부터 3)목까지에 대하여,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3항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호 4)목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공된다.

- 1)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일 것
- 2)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을 것
- 3)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일 것, 그리고
- 4)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될 것

나.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의 상호접속에 관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효율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 1) 상업적 협상, 또는
- 2)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통신규제기관에서 승인 또는 규정한 일련의 표준 조건 및 효율의 참조

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에 관한 절차를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6. 설비 병설¹⁶

¹⁶ 베트남의 경우, 설비 병설은 해저케이블 육양국과 국제 관문국 같은 필수 통신 기반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필수 통신 기반시설은 권한 있는 규제 기관에 의하여 명시된다. 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이 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음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 1)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설비기반 사업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 제공, 그리고
- 2) 1)목에 언급된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설비기반 사업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하여 실현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 및 이행¹⁷

나.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물리적 설비 병설 또는 실현 가능하고 상업적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해결책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다. 각 당사국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리적 설비 병설을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거나 가호에 언급된 실행가능한 그리고 상업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다.

7. 전용회선 서비스¹⁸

각 당사국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지 아니하는 한,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고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재판매¹⁹

¹⁷ 그러한 해결책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근처 건물에 장비를 두고 그러한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망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허가
- 나. 추가적인 장비의 공간 확보 또는 가상 설비병설
- 다. 기존 공간 사용의 최적화, 그리고
- 라. 인접한 공간의 탐색

¹⁸ 베트남의 경우, 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3항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¹⁹ 베트남의 경우, 서비스공급자가 재판매 허가를 받으면 재판매에 나설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9. 번호이동성²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10. 통신규제기관

- 가.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체제의 일부로서 통신규제기관을 설립 또는 유지한다.
- 나.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통신규제기관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다. 각 당사국은 제5항에서 규정된 약속의 이행, 그리고 기구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포함하는 통신규제기관의 기능과 책임이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명시되도록 보장한다.
- 라. 각 당사국은 통신규제기관의 의사결정과 동 기관이 사용하는 절차가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공정하도록 보장한다.
- 마.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행정, 중재 또는 사법 재판소 또는 당국 또는 행정적, 중재 및 사법적 절차에 따라 그 판정 또는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절차가 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을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11.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2.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 가.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선로 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²⁰ 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 나.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 다.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그 자체로 제8.4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13. 통신 분쟁의 해결

-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 해결 기구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나. 각 당사국은 관련 통신규제기관의 최종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 중지 또는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심사가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4. 투명성

제14.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다음을 포함한 관련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가. 서비스의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 나. 그러한 전송 망 및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다. 표준 관련 조치를 준비, 수정 및 채택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 라. 공중 통신 전송 망에 단말장비 또는 그 밖의 장비 부착 시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 마.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15.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16.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장소에서 장비를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란 다음과 같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 설비를 소유한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 나.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설비기반 사업자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특정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또는 그 부분의 공급을 위한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유형(이동통신서비스)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에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당사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된 모든 통신 전송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정해진 지점 사이에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신,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될 수 있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법률 체제에 따라 통신 규제를 책임지는 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